

# 2023년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지원사업 : 리빙랩 실증 모집 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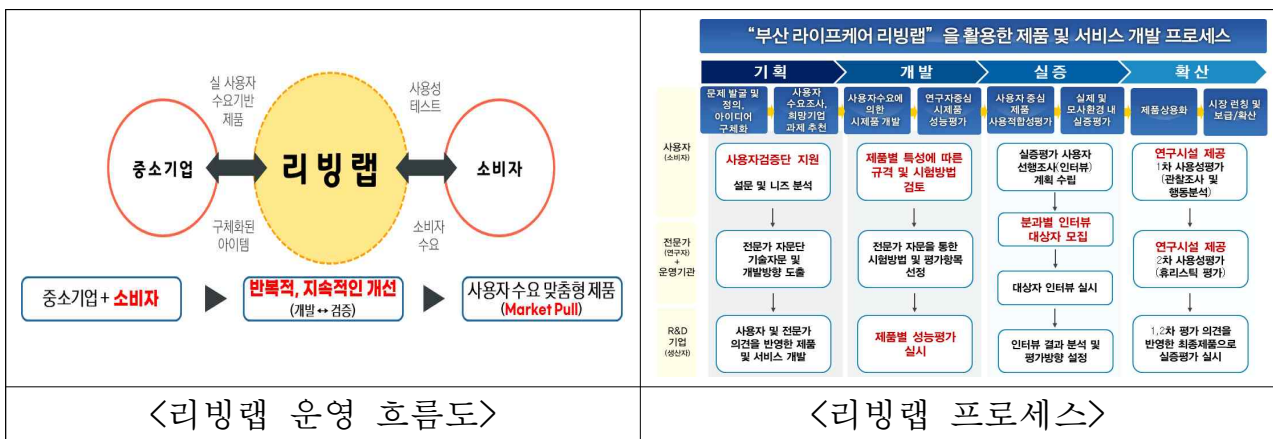
부산테크노파크 의료산업기술지원센터에서는 리빙랩 기반의 실증운영을 통해 제품에 대하여 수요자 중심 검증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친화제품의 고도화에 기여하고자 2023년도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지원사업 : 리빙랩 실증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3년 5월 8일

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원장

## 1. 사업목적

- 고령친화기업에게 리빙랩 기반 실증(사용성평가)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실제 니즈 파악을 통한 제품 개선을 지원하고 디자인, 기술개선, 제품 고도화 등의 요소 도출을 통해 기업의 조기 사업화 지원



## 2. 지원대상

- 고령친화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, 판매하거나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고령친화우수제품 등록을 계획 중인 기업
-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정의된 고령친화제품 중 ICT 활용제품을 생산, 판매하거나 계획중인 기업
- \* [고령친화산업 진흥법 [일부개정 2018.12.11, 법률 제15872호]]
- 그 외 리빙랩 실증이 필요한 제품을 생산, 판매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

## 3. 지원규모

- 신규 리빙랩 지원 6개사, 리빙랩 지원 고도화 2개사(지원금액 추후 협의)

#### 4. 지원내용

- 고품질제품에 대한 실수요자(시니어) 대상 리빙랩 평가 및 연구환경에서의 실증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 발행
- 리빙랩 실증 운영과 관련된 비용 지원
  - \* 실증제품은 기업이 부담하여 제공

#### 5. 지원조건

사업명	지원기간	지원기업	지원한도	지원방식
권역별 고품질화산업 혁신센터 지원사업 : 리빙랩 실증	협약체결일 ~ 2023.11	신규 6개사 고도화 2개사	추후협의	직접지원

#### 6. 신청기간 및 접수처

- 접수기간 : 상시모집 (2023.05.08.(월) ~ 모집마감시 까지)
  - \* 접수한 기업의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기업 8개사(신규 6개사, 고도화 2개사)가 선정되면 모집마감
- 신청방법 : 이메일 제출
- 접수처

접수처	담당자	연락처
부산테크노파크 의료산업기술지원센터	황현석 선임연구원	051-320-3664 (hhs1109@btp.or.kr)

- 제출서류

제출서류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권역별 고품질화산업혁신센터 지원사업 신청서</li> <li>■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</li> <li>■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·기업 정보 이용동의서</li> <li>■ 사업자등록증 사본 (원본대조필 날인 요망)</li> <li>■ 최근 2년간 기업재무제표 (일반과세자 경우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)</li> <li>■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원본 1부</li> <li>■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</li> </ul>	<p>이메일 제출 (hhs1109@btp.or.kr)</p>

#### 7. 평가 및 선정

평가방법		내용
서면평가	평가목적	·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대상기업 선정
	평가항목	· 지원 필요성(30점), 추진계획의 구체성(20점), 추진과제의 차별성(20점), 시장성 및 성장성(20점), 우대가점(10점)
※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및 지원규모 조정될 수 있음		
※ 부산테크노파크 의료산업기술지원센터 타 사업 연계 "2023 부산국제향노화엑스포" 전시회 참여 업체 가점 부여		

## 8. 추진체계

추진절차	수행주체	일정
사업계획 공고 ↓	부산테크노파크 의료산업기술지원센터	
신청접수 ↓	사업신청기업	상시모집
서면심사 ↓	센터	-
실증 상담 및 협의 ↓	신청기업 ↔ 센터	최종선정 이후
협약체결 ↓	참여기업 ↔ 센터	참여기업 선정 후
사업수행 ↓	부산테크노파크 의료산업기술지원센터	상시 진행
결과보고서 발행	센터 → 참여기업	2023년 12월

## 9. 지원제외대상

-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, 기지원된 과제와 유사·중복이 확인될 경우
-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, 의무사항 (보고서 제출, 기술료·정산금·환수금 납부 등) 불이행 중인 경우
-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 대표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인 경우
- 휴·폐업 중인 기업의 경우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되는 경우
-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## 10. 주의사항

- 예산규모 및 편성 내용은 추후 협약체결 단계에서 수정될 수 있음
- 선착순으로 모집 운영되며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-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서류 미비 또는 허위 판명 시 결격 처리 함
-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가 서류요청이 있을 수 있음